

2025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주요 변경사항

□ 주요 변경사항

- (지원대상)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사업과의 중복 지원되지 않기 위하여 '배출권거래제' 및 '목표관리제' 대상기업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
- (사업관리) 사후관리 정의 명확화 및 보조사업의 선제적 관리강화를 위해 매년 제출하는 사업효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(3년 → 5년)
※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(기획재정부 고시) 제46조(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) 제③항4호. 그 밖의 기계,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
- (사업수행) 지원과제 수행 시 발생하는 인·허가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사업의 지체를 방지
- (자격기준) 기존 신청자격 기준 시점을 명확하게 변경하여 참여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통일
- (기타) 관리지침 제2조(정의), 제5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, 제27조(이의 신청) 기준 정리 및 전반적인 용어 수정